

2025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2025년 3월~4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025년 상반기 지역순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2025년도 상반기 지역순회 진행순서



- ✓ 개회
- ✓ 노동의례
- ✓ 인사말
- ✓ 활동보고(정책본부/조직본부)
- ✓ 질의 응답 및 토론
- ✓ 폐회

2



월	화	수	목	금
3/17	3/18	3/19	3/20	3/21
			충남세종	광주전남
3/24	3/25	3/26	3/27	3/28
			구미	
3/31	4/1	4/2	4/3	4/4
		울산경주/대구경북		
4/7	4/8	4/9	4/10	4/11
		전북	대전/포항	
4/14	4/15	4/16	4/17	4/18
서울/인천	충북/안산시흥			
4/21	4/22	4/23	4/24	4/25
	경남 / 부산		경기	



2025년 정세

2025년 정세 – 불평등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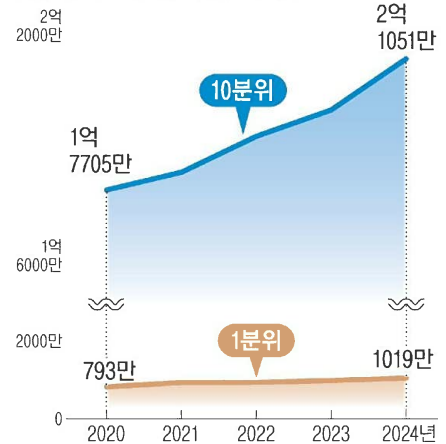


신(新) 계급사회 도래? 소득/자산소득 격차 역대 최대치 기록

- ⇒ 2024년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 연 2억원 돌파 (통계작성 이래 최초)
- ⇒ 상위/하위 10%간 자산격차 15억원 이상 격차 확대
- ※ 소득 상위 10% 재산소득 급증 (성과급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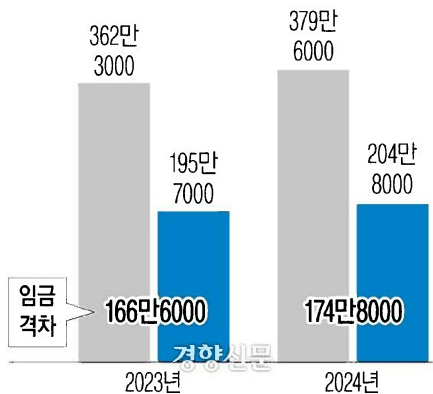
소득 1분위·10분위 소득 격차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경상소득 기준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원, 자료: 통계청



이분화된 노동시장: 노동분단국가, 노동신분제사회

- ⇒ 대기업 593만원 - 중소기업 298만원 임금격차 2배
- ⇒ 남성 426만원 - 여성 279만원 임금격차 1.5배: OECD 회원국중 1위
- ⇒ 정규직 379만원 - 비정규직 204만원 임금격차 7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5

2025년 정세 – 불평등 양극화 심화



끊어진 고용사다리

- ⇒ 2022년 기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동 12% (2002~2006년 45% 수준)
- ※ 정규직 고용 유지가능성: 2002년 85%에서 2020년 93% 증가
- ⇒ 비정규직노동자중 1년 후 정규직 전환비중 10.1% 불과, 76.3% 비정규직 유지
- ⇒ 쿠팡의 '단절된 사다리' 모형: 계속고용 미끼 계약직/일용직 고용, 노동취취의 극단적 불안정고용 시스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1,900만명 육박

- ⇒ 플랫폼노동자 292만, 프리랜서 400만 등 제도 밖 노동자 비릇 노동법 미보호 노동자 1,900만명 육박

주 : 전통적 표준화된 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과 표준화된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방식이 증가되면서 비임금노동자 증가 추세

6

2025년 정세 – 경제



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연말뉴스

자료: 한국은행

김민지 기자 20250225

저성장 고착화: 성장동력 상실 경제위기

⇒ 한국은행 2025년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1.5%** (2026년 성장률 1.8%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 국제통화기금(IMF) 2.0% / 한국개발연구원(KDI) 1.6% / 해외투자은행(IB) 1.6% 보다 낮게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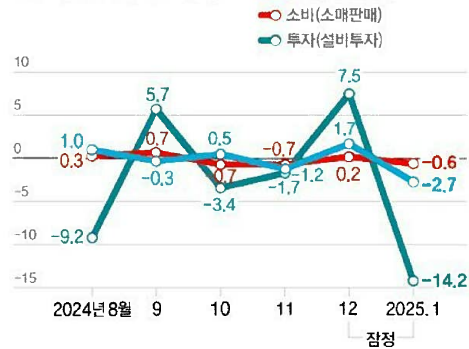
⇒ 2023년 1.4%, 2024년 2.0%, 2025년 1.5%, 2026년 1.8%

4년 연속 2% 이하 유래없는 저성장

⇒ 한국은행 총재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

산업활동 증감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계절 조정 지수



자료: 통계청

The JoongAng

7

‘피크 코리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 2025.1.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신호 선명

2025년 정세 – 인구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단위: 명, 자료: 통계청



5년간 45만명 인구감소: ‘인구절벽’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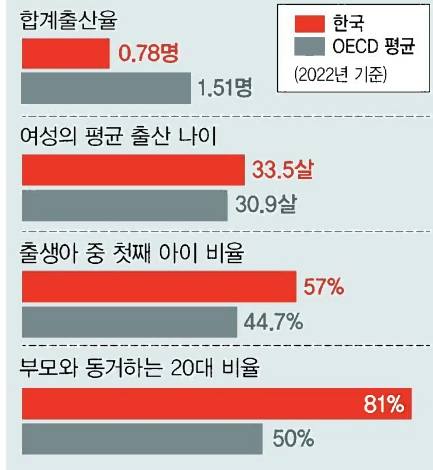
⇒ 2024년 출생아수 23만8,000명 전년대비 8,000명 증가

⇒ 2024년 출생아수 9년만 감쪽 반등, 사망자수 35만 8,000명으로 출생자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12만명) 5년째 지속

⇒ 5년간 총 45만6,000명 감소: 전체 인구 약 0.9% 5년새 사라짐. (2024.12.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21만 7,000명)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악인 출산율 지표

자료: OECD ‘한눈에 보는 사회 2024’(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출산율 반토막, 우리나라 1/8 감소

⇒ 60년 새 OECD 출산율 3.34→1.51명, 우리나라 6→1.51명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감소 최고치 기록

⇒ 출산 여성 평균연령 33.5세 최고령

⇒ 부모 동거 20대 비율 81%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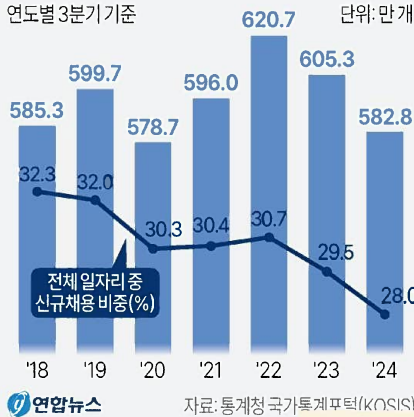
8

2025년 정세 – 고용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 일자리 추이

해당 시점에 아직 퇴직이 발생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연도별 3분기 기준



신규채용 비중 6년만 최저

⇒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채용 비중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기록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 차지 비중 28.0%)

⇒ 전체 일자리 비중 가장 높은 '제조업' 신규채용 19.9%, 20% 이하 사상 처음

'쉬었음' 인구 273만명 역대 최대

⇒ '실업률 최저, 고용률 최고'의 모순:

4주 구직활동시 비실업자, 1주 1시간 일해도 취업자 간주

⇒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 44만 3,000명 통계작성 이래 최대

연말뉴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김영은 기자 20250220

실업률 최저, 고용률 최고인데 '쉬었음' 인구는 최대

(단위: %, 만명)
※매년 6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구조

(단위: 명) ※2024년 6월 기준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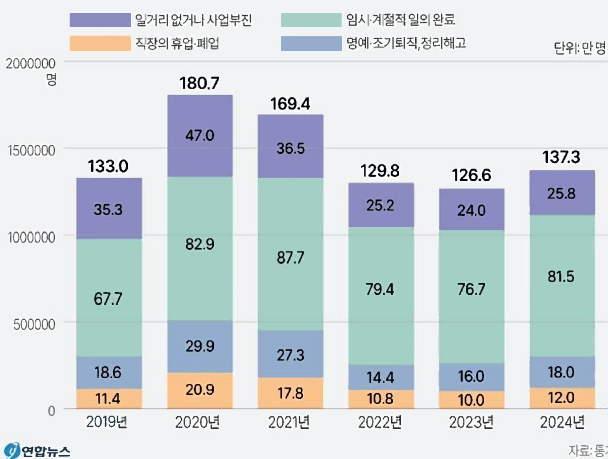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2025년 정세 – 고용



비자발적 퇴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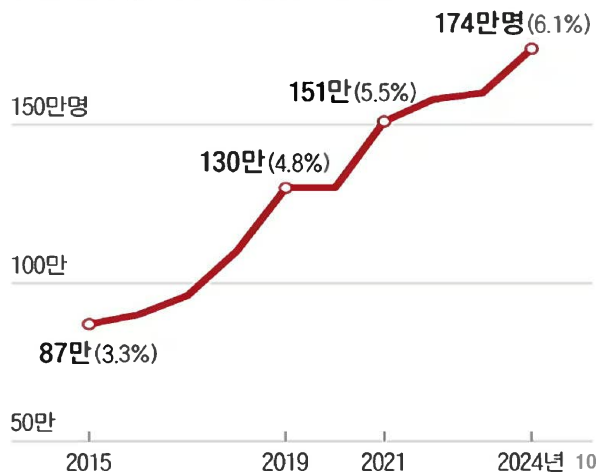


직장에서 떠밀려나는 노동자들

⇒ 2024년, 비자발적 퇴직자 137만 2,954명 전년대비 8.4% 증가 (퇴직자 10명중 4명꼴, 정년퇴직 등 실직자 16만명 8.3배)

주당 1~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단위: 명. 괄호 안은 전체 취업자 중 비중



불안정-저임금 '초단시간' 노동 급증

⇒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74만명

⇒ 1주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50만명 (1980년 이래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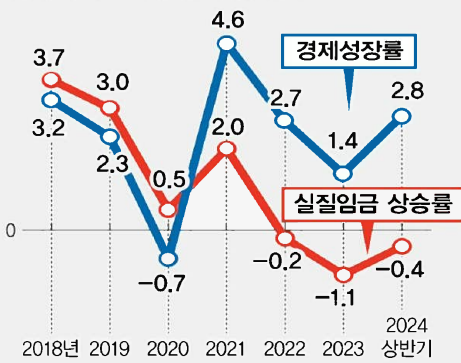
⇒ 1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900만명 육박 (통계작성 이래 최대)

2025년 정세 – 임금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실질임금 하락

- ⇒ 2022년부터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세 전환 (2년 6개월간 누적 실질임금상승률 -1.7%)
- ⇒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불안정, 미관세 부담 등 대내외 악재 속 2025년 실질임금 하락세가 더욱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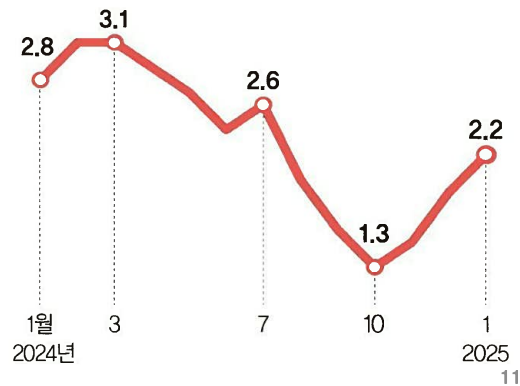
치솟는 소비자물가

- ⇒ 2025.1. 소비자물가상승률 5개월만 2% 진입 (고환율/고유가 원인)
- ⇒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5% 2024.7.이후 최대치 기록 등 물가상승세 지속 전망
- ※ 임금인상(명목임금인상률)이 물가수준(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 감소현상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5년 정세 –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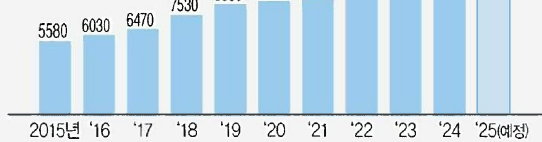
최저임금·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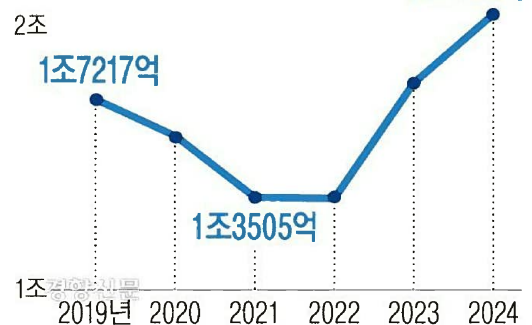
- ⇒ 윤석열 정부 이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1990년 이후 평균 물가상승률은 3.45%, 최저임금인상률 8.22% 두배 이상)
- ⇒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1.7%, 소비자물가상승률 2.0%보다 하회

사상 최대 임금체불: 체불액 2조 돌파

- ⇒ 2024년 임금체불액 2조 448억, 2023년 대비 14.6% 증가
- ⇒ 체불 피해 노동자 28만 3,212명 전년대비 2.8% 증가
- ※ 경기 위축, 대우위니아 등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 원인

임금체불액 추이

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 일본은 고물가에 역대 최대 임금인상으로 대응 (그래도 실질임금 감소)

- ⇒ 2024년 일본은 33년만 최대 임금인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현금 급여 총액 34만 8,182엔(약 328만원), 2023년 대비 2.9% 증가→ 1991년(4.4%) 이후 3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
- ⇒ 물가상승률 3.2%, 물가변동 반영 실질임금 2023년 대비 0.2% 감소
 - ※ 2024년 일본 춘투 최종 집계결과: 평균 임금인상률 5.58% (2023년 대비 1.59%p 상승, 1991년 5.6% 이래 최초)
- ⇒ 국가공무원 월급 평균 2% 이상 인상 방침: 1992년 이후 32년만
- ⇒ 2024년 최저임금 1.054엔 역대 최대 인상, **일본경제단체 “구조적인 임금인상은 기업의 책무” 우리의 현실은???**



13

2025년 정세 – 노동시간

평균 연간 근로시간 추이



여전한 초장시간 노동국가 대한민국

-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 1,872시간 (OECD 국가중 6번째, OECD 평균대비 130시간 노동)
- ⇒ 1주 60시간 노동 과로사 최근 5년간 2,500명 육박
-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오남용: 단순 업무량 폭증 인가 3,966건(69%) 대부분, '주 52시간 상한제' 회피 수단 악용
- ⇒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적용제외 국회 논의: 삼성전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2023년부터 2년간 23건,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SK 하이닉스 0건
 - 노동시간이 국가경쟁력 강화, 노동생산성 증가 등과 무관하다는 사실 증명

워라벨 중시 사회풍토 변화

-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청년층 63% 임금/복지보다 워라벨 중요
- ⇒ 필수복지제도 '특별휴가(안식년)' 38.5%, '유연근무' 35.4%
- ⇒ 적정 주당 노동시간: 40~45시간 50%



14

주 4일제 시행·시범 운영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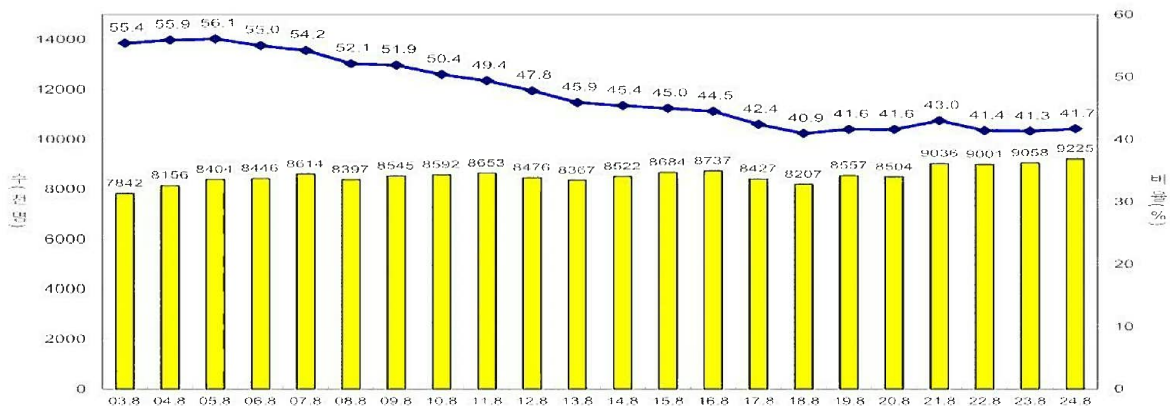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주 4일제 도입 움직임



국내외 활발한 ‘주4일제’ 도입 실험

- ⇒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극복 대안 다양한 ‘주4일제’ 도입 열풍
(주4일제를 통해 출퇴근시간 감축시 지구온난화 1/4~1/2 완화: 생태전환적 노동시간 감축)
- ⇒ 연구개발, 사무직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업종 불문 주4일제 도입 실험
-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극복 목적 주4일제 근무제 시행 확대: 서울, 경기도,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주4.5일제)
※ 경기도: 도내 50여개 기업 대상 주4.5일제(격주 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중 선택) 시범 시행



비정규직 규모 증가, 한시적(임시적) 비정규직 전체 41.7%

- ⇒ 2024.8. 기준 비정규직 923만명, 전년대비 17만명 증가 / 전체 임금노동자 41.7%
- ⇒ 기간제 500만명(22.6%), 시간제(파트타임) 426만명(19.2%)
- ⇒ 비정규직 91.8%(923만명중 847만명) 한시(임시)노동자 → 불안정고용 심각

대기업이 비정규직 증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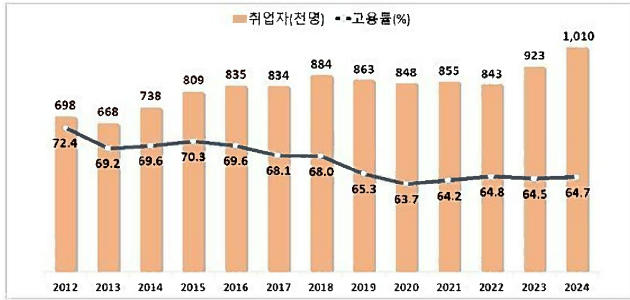
- ⇒ 1만명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6.2%, 간접고용 비율 33.3% →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율 높음

2025년 정세 – 비정규노동



외국인 취업자·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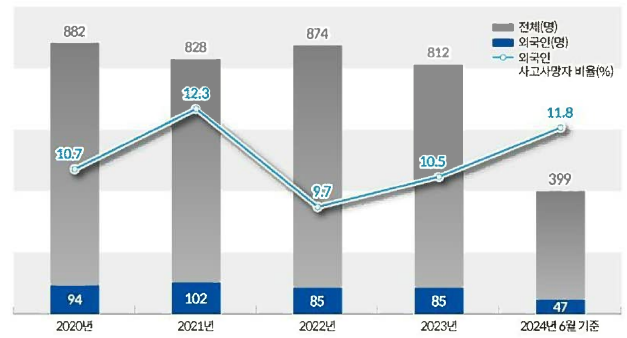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연도별 내·외국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연도가 아닌 '승인연도 기준'으로 산출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홍준현 미술가]

NEWSPIM

2024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 ⇒ 2024.5. 기준 15세 이상 국내상주 외국인 156만 1,000명 / 2023년 대비 9.1% 증가(13만명)
- ⇒ 취업자 101만명, 2023년 대비 8만 7,000명 증가
 - 2024.4. 기준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노동자 23만 3,000명
 - **지난 3년간 1,194% 폭증**
- ⇒ 월평균 임금 200~300만이 48만 9,000명 /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 64%

위험의 '이주화': 차별의 대명사 이주노동

- ⇒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중 외국인노동자 비율 12%
- ⇒ 산재 승인율 감소 추세
- ⇒ 사업주 변경 제한,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 심각

17

2025년 정세 – 반노동정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추진결과: 노동환경의 급격한 악화 / 후퇴

구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결과
최저임금	역대 정부 최초로 물가상승률(3.1%)보다 낮은 인상률(3.06%)
임금체불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1조 7845억)
산업재해 만인율	약간 감소(0.9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상 효과
노조 조직률	14.2%에서 13.1% 감소
사회적대화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 합의 없음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대 정부 최초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없음
노조법 2,3조 개정	역대 정부 최초로 두 번 연속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전국민적 반대여론 역풍으로 무산
고용률	역대 최대 고용률(62.6%) ⇒ 고령자, (초)단시간 노동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 급격 증가
노사관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지 ⇒ 월 소득 137만원 감소, 운임수수료 10% 삭감 등 ※ ILO 한국정부 결사의자유 침해 권고결정 (350 이사회)
	건설노조 교섭 등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혐의로 입건 ⇒ 초기업 수준의 공동교섭 중단(사측 거부), 공갈·협박 행위로 35명 구속, 건설노동자 양회동 분신사망 등 ※ 타워크레인 월레비 요구는 정당한 교섭활동(법원), ILO 제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조사 ⇒ 노조간부 34명 집단 해고 ※ 노사자율교섭 저해, 노사간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노조간부만 징계
	※ 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반도체특별법 도입 시도

※ 자료: 정흥준, "윤석열 정부 노사관계 평가와 22대 국회의 역할", 2024. 편집

18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추진결과 : 노사법치주의 = ‘노조탄압’ 증명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자료 등 미제출 (과태료 150만원 부과), 현장조사 불응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법원의 과태료재판 결정

⇒ 총연맹, 금속노련, 공공연맹 3개 조직 6개 사건 (각 조직별 2건) 과태료재판 결과 나오는 중

⇒ 약식재판에서 향후 ‘정식재판’ 진행 예정

고용노동부의 안전문화확산 사업비 미지급 소송

⇒ 2025.2.28. 한국노총 (원고) 승소

그동안 ‘노사법치주의’ 핑계로 노조 때려잡기, 노조 꼬투리잡기, 노조 왕따시키기, 노조 갈라치기 노조탄압 4종세트 추진

⇒ 현장 임단협 난항, 노사관계 악화, 노조활동 위축 등 부작용 속출

※ 노조때려잡기: 폭력연행, 압수수색 등 극단적 공권력 남용 / 노조꼬투리잡기: 노조회계감시 등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
노조왕따시키기: 각종 정부위원회 등 양노총 일방적 배제 / 노조갈라치기: 노조간 분열 조장 및 이간질

19

2025년 정세 – 정치



한국노총 대선 대응 방향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격변기: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임무 완수

⇒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 위축, 더욱 악화되는 노동정세, 극단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대적 취약 노동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을 견인해 가야 할 시대적 소명

⇒ 노동존중 개혁과제의 법·제도적 관철을 위해 어느때보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의 단결과 참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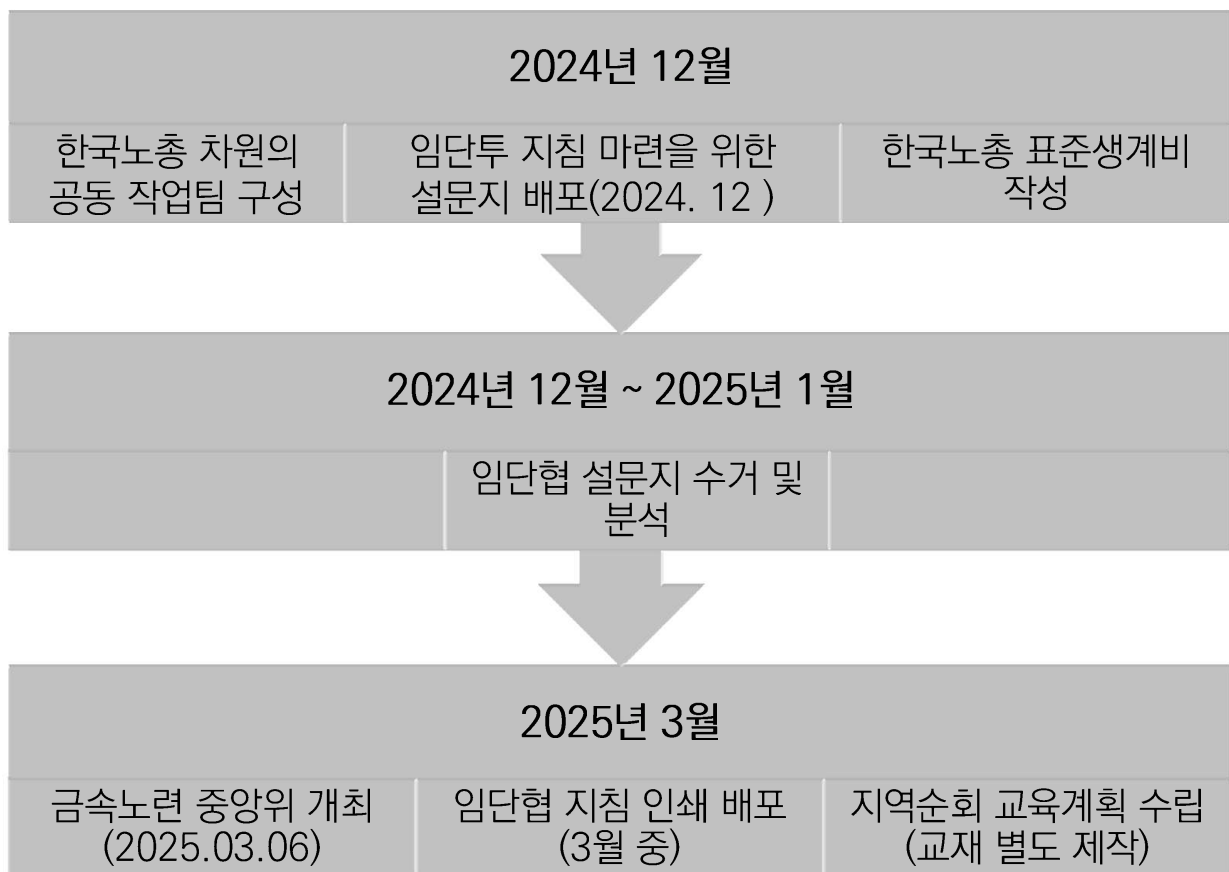
시기 및 성격	대선전		새정부 출범 후 (6월 ~)
	탄핵정국(2월 ~3월)	조기대선(4월 ~6월)	
활동 기조	- 내란사태 퇴진 및 사회개혁 활동	- 조직적 참여와 결의 - 핵심 노동정책 의제화	- 전략적 개입과 대선 핵심 노동정책 의제 관철
주요 활동	- 대통령 탄핵, 반민주 내란세력 단죄 퇴진 투쟁 - 대선기획단 운영 및 대선 노동정책 의제 수립 - 대선 노동정책 요구 발표 - 사회개혁 위한 노동시민사회 개혁과제 수립	- 대선 노동정책 의제화 및 주요 정당 정책 공약화 - 대선후보 노동정책 수용도 평가 - 각 정당 대선 후보 정책 견인회 - 대선 정책 협치 수립 - 친노동·민주개혁 후보 정책 연대 및 지지 -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대회, 5월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한국노총의 핵심 노동정책 요구 국정과제 반영 - 대선 정책 공약 관철을 위한 정책협약 이행 점검 TF 운영 - 한국노총-여당-정부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노동중심의 사회적 대화 의제 수립 및 관철

20

2025년 임금투쟁지침

21

2025년 임금투쟁지침



22



1. 조사개요

- 1) 목적 :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고, 2025년 임금상요구율 및 임금지침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
- 2) 조사기간 : 2024. 12. 19.~ 2025. 1. 17.
- 3) 조사방식 : 금속노련 산하 560개 (본조 및 일반노조 개별교섭단위 포함,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설문은 자기 기입식. 수거된 설문지는 149부이며, 수거율은 26.6%

2.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거량	98	122	180	154	196	149
수거율	19.8	24.0	34.2	27.7	34.7	26.6

23



3.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2024년 12월 기준, 단위: 원)

기본급(A)	고정수당(B)	상여월할(C)	고정급 (A+B+C)	변동급(D)	임금총액 (A+B+C+D)
2,536,551	378,773	1,319,863	4,235,187	846,435	5,081,622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임금실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본급, 고정급, 임금총액은 매년 상승함.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월할, 변동급 모두 2024년에 비해 증가함. 2023년 임금총액 상승률은 2.61%인데 반해 2024년은 3.74%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24년 12월 기준, 단위: 원)

연도	기본급(A)	고정수당(B)	상여월할(C)	고정급 (A+B+C)	변동급(D)	임금총액 (A+B+C+D)	임금총액 상승률(%)
2024	2,536,551	378,773	1,319,863	4,235,187	846,435	5,081,622	3.74
2023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2.61
2022	2,367,219	414,448	1,207,539	3,989,206	788,803	4,773,633	4.89
2021	2,177,616	454,195	1,231,120	3,862,931	687,676	4,550,910	1.76
2020	2,017,487	549,842	1,183,632	3,750,961	721,025	4,471,986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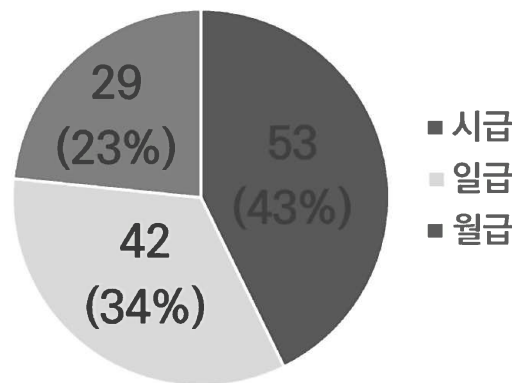
24

2025년 임금투쟁지침



- 임금형태는 시급제가 42.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일급제는 23.2%로 지난해 18.3%보다 증가했고, 월급제의 경우 지난해 37.8%에서 34.4%로 감소함.

구분	응답수	백분율(%)
주간통상근무	72	49.7
2조2교대	47	32.4
3조2교대	13	9.0
3조3교대	18	12.4
4조2교대	9	6.2
4조3교대	20	13.8
주간연속2교대	14	9.7
기타	3	2.1



- 근무형태는 주간통상근무만 한다고 응답한 곳이 28.2%(42곳)로 지난해 27.5%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 조합원이 일부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노조가 71.8%(107곳)로 지난해 72.5%보다 약간 감소함.

25

2025년 임금투쟁지침



-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은 47.1시간으로 최소 30.0시간부터 최대 65.8시간으로 나타남. 주 40시간 이하는 14.1%로 지난해 11.8%보다 증가함.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사업장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 52시간 사업장은 26.8%로 지난해 32.6%보다 감소함.
-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어들었으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구분	응답수	백분율(%)	연도	52시간 초과 사업장 비중(%)
40시간 이하	21	14.1	2020	11.7
40시간 초과~51시간 이하	67	45.0	2021	4.3
52시간	40	26.8	2022	4.9
52시간 초과~60시간 이하	3	2.0	2023	6.5
60시간 초과	1	0.7	2024	2.7
합계	132	88.6		

26

2025년 임금투쟁지침



- 2024년 임금인상요구율 평균은 6.96%로 지난해보다 0.77%p 하락했고, 타결률 평균은 4.09%로 지난해보다 0.23%p 하락함. 요구액은 평균 166,465원이었으며, 타결액은 89,555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특히 타결액은 3년 만에 1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짐.

연도	요구율 평균(%)	타결률 평균(%)
2020	5.88	2.70
2021	6.36	3.80
2022	7.55	5.32
2023	7.73	4.32
2024	6.96	4.09

연도	요구액 평균(원)	타결액 평균(원)
2020	114,533	60,144
2021	130,396	75,221
2022	164,060	100,973
2023	180,318	146,919
2024	166,465	89,555

27

2025년 임금투쟁지침



4. 단위노조의 2025년 중점사항

2025년 단위노조 임단투 중점사항	중점1	%	중점2	%	중점3	%	전체 응답수	%
총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29	19.9	17	11.6	9	6.4	56	37.9
노동시간 축소	7	4.8	13	8.9	15	10.6	35	24.3
정년연장 대응	18	12.3	22	15.1	38	26.9	79	54.3
임금체계(직무성과급 도입 등) 변경 저지	4	2.7	13	8.9	9	6.4	26	18.0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2	1.4	1	0.7	4	2.8	7	4.9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3	2.0	33	22.6	36	25.5	72	50.1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1	0.7	1	0.7	3	2.1	5	3.5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	80	54.8	32	21.9	16	11.4	129	88.1
기후위기·자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1	0.7	5	3.4	6	4.3	12	8.4
임금피크제	1	0.7	9	6.2	5	3.6	15	10.5
합계	146	100.0	146	100.0	141	100.0	433	300.0

28



5. 금속노련(한국노총) 2025년 중점사항

2025년 금속노련 (한국노총) 활동 중점사항	중점1	%	중점2	%	중점3	%	전체 응답수	%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25	17.1	9	6.2	11	7.8	45	31.1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저지	28	19.2	33	22.8	20	14.1	81	56.1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	35	24.0	28	19.3	22	15.5	85	58.8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관련 대응	10	6.8	25	17.2	20	14.1	55	38.1
정년연장 대응	37	25.3	16	11.0	22	15.5	75	51.8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3	2.1	20	13.8	31	21.8	54	37.7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악저지)	6	4.1	7	4.8	9	6.3	22	15.2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0	0.0	0	0.0	0	0.0	0	0.0
기후위기·자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1	0.7	2	1.4	3	2.1	6	4.2
취약계층 및 비정형 노동자 권익증진	1	0.7	5	3.5	4	2.8	10	7.0
합계	146	100.0	145	100.0	142	100.0	433	300.0

* 29



6. 2025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율

생계비 충족률 97.5%	기본급대비 7.54% (191,377원)
생활물가 폭등으로 임금인상 욕구와 기대심리,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24년도 금속노련의 임금인상요구는 표준생계비의 97.5%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7.54%(191,377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2025년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통계의 기초로 활용함. 2025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24년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됨.
- 가족규모는 2025년 금속노련 임단투지침 실태조사의 결과인 2.63인을 적용함.
- 물가수준은 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를 적용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비중은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한 83%를 적용함.
- 각 사업장 단위에서 활용할 때는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도록 함.

* 30



202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원, %)

구분	전체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금액	7,256,446	7,125,813	6,046,578	349,079	57,157	672,999	130,632
비중	100.0	98.2	83.3	4.8	0.8	9.3	1.8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2025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금액	2,849,736	4,667,952	6,034,387	8,088,185	8,845,439
구성 모형	25~29세 여성/남성 1인 평균	33세 남성 31세 여성	39세 가구주(남성) 37세 배우자(여성) 6세 자녀	46세 가구주(남성) 44세 배우자(여성) 14세 자녀 11세 자녀	51세 가구주(남성) 49세 배우자(여성) 21세 자녀 18세 자녀

* 31



- 임금인상요구율 산출근거

계산식1) 금속노동자 평균가족규모 2.63인에 대한 생계비 산출

$$\begin{aligned}
 & 2인가구생계비 + (3인가구생계비 - 2인가구생계비) \times 0.63 \\
 & = 4,667,952 + (6,034,387 - 4,667,952) \times 0.63 \\
 & \approx 4,667,952 + 860,854 \\
 & = 5,528,806원
 \end{aligned}$$

계산식2) 2.63인의 생계비에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한 생계비 산출

$$\begin{aligned}
 & 2.63인의 생계비 + 소비자물가 전망치 1.8\% \\
 & = 5,528,806 \times 1.018 \\
 & \approx 5,628,325원
 \end{aligned}$$

계산식3) 가족규모와 물가반영 생계비에 노동소득 비중 반영 생계비 산출

$$\begin{aligned}
 & 가족규모와 물가를 반영한 생계비 \times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 \\
 & = 5,628,325 \times 0.83 \\
 & \approx 4,671,509원 (최종 필요 근로소득, 목표생계비)
 \end{aligned}$$

32



- 임금인상요구율 산출근거

계산식4) 최종 필요 근로소득과 금속노동자 월 고정급과의 차액산출

최종 필요 근로소득 - 금속노동자 월 고정급

= 4,671,509 - 4,235,187

= 436,322원 (근로소득 부족분)

계산식5) 금속노련 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임금인상률 산출

근로소득 부족분 ÷ 월 고정급 × 100

= (436,322 ÷ 4,235,187) × 100

≒ 10.30 (%) (충족 요구율, 필요임금 인상률)



〈2025년 생계비에 따른 임금인상요구율(액) 조건표〉

생계비충족률(%)	목표생계비(원)	차액(원)	고정급 대비 기본급 비중(%)	기본급 요구액(원)	기본급 요구율(%)
100.00	4,671,509	436,322	59.89	261,324	10.30
99.50	4,648,152	412,965	59.89	247,334	9.75
99.00	4,624,794	389,607	59.89	233,345	9.20
98.50	4,601,437	366,250	59.89	219,355	8.65
98.00	4,578,079	342,892	59.89	205,366	8.10
97.50	4,554,722	319,535	59.89	191,377	7.54
97.00	4,531,364	296,177	59.89	177,387	6.99
96.50	4,508,007	272,820	59.89	163,398	6.44
96.00	4,484,649	249,462	59.89	149,409	5.89
95.50	4,461,291	226,104	59.89	135,419	5.34
95.00	4,437,934	202,747	59.89	121,430	4.79
94.50	4,414,576	179,389	59.89	107,440	4.24
94.00	4,391,219	156,032	59.89	93,451	3.68



7. 한국노총 및 화학노련 연도별 임금인상요구 비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속노련	7.3	8.62	9.67	8.59	7.54
한국노총	6.8	8.5	9.1	8.3	7.3
화학노련	7.1	7.4	4.26	7.7	6.6

* 35



2025년 금속노련 임단투지침 주요쟁점

* 36

2025년 임단투지침 주요 쟁점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2.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저지와 시간주권 확보
3. 불평등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교섭 실현
4.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5. 노동조합 개입을 통한 노후준비 및 은퇴소득 강화
6.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
7.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을 통한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
8.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
9.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10. ESG 경영 및 공급망 실사에 따른 노동조합 참여 방안



37

2025년 임단투지침 주요 쟁점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 제외

구분	기준 판례(대법원 2012다89399)
통상임금 판단지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고정성 판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
적용범위	모든 사건에 동일 적용



새로운 판례(대법원 2020다247190판결등)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 일률성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어 '채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정 가능 선고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38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조건부 임금

노동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노동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 성과급

노동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무실적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3년	2024년판결이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 (근무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 (근무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만큼만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 일정액은 통상임금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 (사전미확정,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노동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 ×, 고정성 ×)	통상임금 ○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통상임금 ○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임금체계/구성 관련 사내규정을 확인할 것
- ⇒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감시/저지할 것
-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항목을 분석할 것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 임금 구성항목과 통상임금(범위) 변화 확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변화 (주휴일이 하루인 월급제 노동자 기준, 단위: 원)

임금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급	2,500,000	2,500,000
상여금(지급일 재직때 지급)	500,000	500,000
식대(15일 이상 근무때 지급)	200,000	200,000
성과수당(목표달성때 지급)	200,000	200,000
연장노동수당(30시간치)	538,278	688,995
합계	3,938,278	4,088,995
통상임금	2,500,000	3,200,000

※ 시간당 연장노동수당=월 통상임금/209시간×1.5배(연차수당은 1.0배)

41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 ⇒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확인후 관련조항을 정비할 것
- ⇒ 재직근무일수 기준 지급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지급을 요구할 것
- ⇒ 기본급 확대 및 임금구성항목을 단순화할 것
- ⇒ 단체협약상 임금구성항목을 최대한 명확히 열거할 것
- ⇒ 사측의 직무/성과급 등 변동급 도입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 ⇒ 사측의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에 적극 대응할 것 (유연근무제 악용, 인력감축 및 외주화 등)
- ⇒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법률지문/소송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

42



1. 통상임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 주의사항!!!

- ※ 통상임금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약정 통상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면과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 ⇒ 사측과 단협으로 정한 약정 통상임금이 근기법 등 법정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
-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이나 금원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였더라도 무효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함.
 - ⇒ 임금항목별로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의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법정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약정 통상임금으로 정한 수당의 경우, 이 수당을 제외한 후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그 차액 여부에 따라 법 위반 및 무효 여부 판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없이 각종 급여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기존의 노사합의는 모두 유효하므로 기존의 유리한 합의는 그대로 유지

43



2.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저지와 시간주권 확보

시간주권 :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 ⇒ 노동시간 길이 및 배치, 강도나 방식 등을 노동자가 결정 → 삶의 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
- ⇒ 일생을 관통하는 시간 사용의 주체성/자율성 확보 → 시간빈곤 구조 타파

시간주권 확보 및 장시간노동 근절 2025년 한국노총 대응방침

- ⇒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제도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
- ⇒ 업종별/직종별 노동시간 적용제외 등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총력 저지
-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정상화
- ⇒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등 한국노총 핵심정책과제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철활동 전개
- ※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1시간 최소연속휴식시간제(연속휴식권) 전면적 보장, 노동시간 적용제외/예외 및 특례종업종 폐지,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동자 보호, 포괄임금약정 금지, 근무시간외 연결차단권 도입,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차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관리

44



2.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저지와 시간주권 확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현장 대응원칙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노동자 보호조치 사전 합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 서면합의’ 원칙 확립

‘기존 임금수준 저하방지’ 및 ‘건강권 보호조치’
- 1일·주 최대 노동시간 상한 정하기, 예) 1일 10시간, 1주 60시간 등

단위기간내 사전 합의된 근무일별, 주별 노동시간의 변경시 노사합의 절차 준수

유연근무제 시행을 연중 1회로 한정하거나 연속적 시행 차단할 것

신규채용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간단축 및 충원 계획에 대한 노사합의 동시 추진

45



2.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저지와 시간주권 확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현장 대응원칙

유연근무제 시행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권’ 및 ‘일방해지권’ 명시

⇒ “본 합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최대 4주년을 정하여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며, 해당 기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날이 포함된 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항 마련

→ 유연근로시간제 시행상 문제점 발견, 사측 제도악용 등 노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회 해당 합의효력 상실 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시 ‘개별 노동자 동의’ 아닌 ‘노조 동의’ 단협 명시

⇒ 현행 근기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실시요건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개별 노동자 동의’

→ 사측이 노동시간 제도운용상 노조와의 교섭/협상을 우회/회피 가능, 노조세력 약화 및 노조활동 위축 등 초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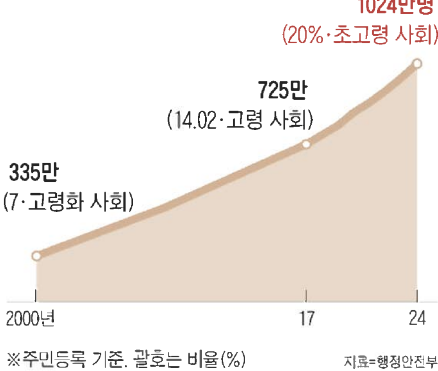
⇒ 인가기간 및 대상 노동자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 노동조합의 동의 필수 명시

46



4.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한국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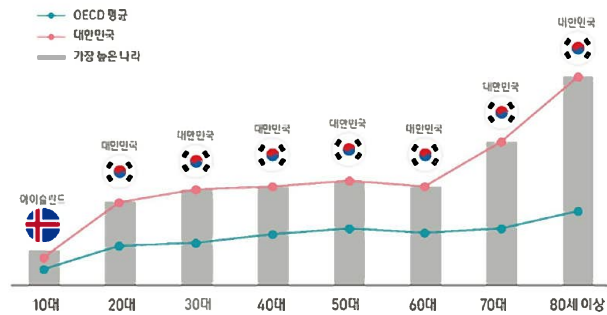
초고령사회 진입 : 65세 이상 노인 20% 이상

- ⇒ 65세 이상 인구 1,024만 초과
(UN: 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 ⇒ 고령화 속도 세계최고 수준 : 초고령사회 7년만 진입
- ⇒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65세 이상 2049년
→ 우리나라 노인인구 2,000만명 육박
- ⇒ 생산가능인구 2023 3,657만명 → 2044년 2,717만명 1,000만명 감소

노인빈곤율/자살률 심각

-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4명 빈곤층 38.2%
→ OECD 회원국 평균 14.2% 대비 3배 (40.4%)
- ⇒ 2021년 기준 노인자살률 42.2명 OECD 대비 2배 이상

20대~80세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음



[출처 : WI10의 2024 Mortality database를 활용하여 연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산출]



4.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정년연령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

-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 불일치, 우리나라가 유일
- ⇒ 직장생활 연장, 노후준비/설계 필요
- ⇒ 해외 주요국 고령화 대응, 정년연장 강제(연금수급=정년 제도화), 조기퇴직금지법 제정 등

<정년과 국민연금개시연령 간 격차>

해당연도	2013~2017	2018~2022	2023~2027	2028~2032	2033~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령(A)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정년연령 하한 (국민연금가입상한(B))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소득 크레바스(A-B)	1년	2년	3년	4년	5년

<국가별 법정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현황>

국가별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법정 정년	60세	65세	없음	67세 (2030년까지 단계적 68세)	없음	65세 (2029년까지 단계적 67세)	62세
연금수급 개시연령	65세(2033)	65세 (기초+후생)	67세	68세(2030)	67세	67세(2031)	62세



4.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법정 정년연장 관련 한국노총 정책방향

- ⇒ 고령자고용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연금수급연령 연계 단계적 연장)
- ⇒ 임금피크제 폐지
- ⇒ 노동조건 후퇴없는 재고용 보장(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 노동시간과 임금이 비례한 '노동시간피크제' 또는 '노동시간단축청구권 도입'
- ※ 임금피크제 연차별 임금감액률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 단축된 노동시간 적치 및 사용

구분	한국노총	사용자단체(정년보고서, '23.9)	정부
고용방식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정책	노사지율로 선택(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임금조정	'나이'를 이유로 임금삭감 반대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계
기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고령자 파견허용 확대 등	-



4. 고령자 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법정 정년연장 관련 현장대응방안

- ⇒ 임금 조정 없는 60세 정년 확보 : 사업장 내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및 조정 / 노동시간과 임금이 비례 '노동시간 피크제' 나 '노동시간단축청구권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
- ※ 임금피크제 연차별 임금감액률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 단축된 노동시간 적치 사용 방법
- ⇒ 단체협약으로 국민연금수급연령 시기와 연동한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 고령자 생계 불안/노후 빈곤 방지 목적, 현재 정년 연령을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동시켜 교섭 진행
- ⇒ 고령자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 고령화의 진전 및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자의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강화
- ⇒ 고령자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정년 이후 고려, 체력관리/의료자원을 통한 건강유지 지원,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
- ⇒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과 내용, 방법 등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8.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칼바람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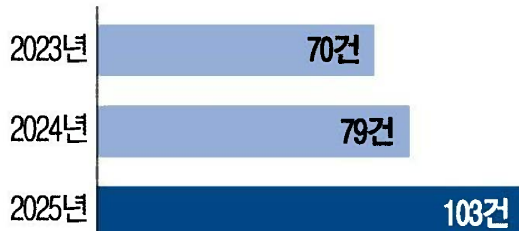
- ⇒ 카드사 20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시행
(단순 비용절감 차원 아닌 카드산업 성장동력 저하 이유)
- ⇒ 기업화생절차 돌입 홈플러스, 유통 구조조정 신호탄

8개 카드사 희망퇴직 현황 (단위:명, 자료:각사)

회사	시행여부	대상 인원수	직전 희망퇴직 시기
우리	O	투자릿수	2022년 말
현대	O	투자릿수	2022년 말
KB국민	O	투자릿수	2021년 12월
신한	O	62(추정)	2023년 1월
하나	O	투자릿수	2022년 말
BC	X	-	2016년
삼성	X	-	2012년 말
롯데	X	-	2012년 말

그래픽 오성수 아시아경제

국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현황



*1~2월 기준, 2월은 27일까지, 전문건설업체 제외.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2025.2.까지 폐업신고 종합건설업체 총 102개소

(하루 1.8개꼴 종합건설사 폐업,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 시 총 606개소 폐업신고)

⇒ 건설업 종사자수 2013년 이후 처음 10만명 이상 감소 (11만 4,000명)

51

8.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



기업파산 사상최대 경신

⇒ 2024.11. 법원 접수 기업(법인) 파산 신청건수 1,745건으로 통계집계이래 역대 최고치 경신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원인, 하루 5개소 줄파산

→ 기업 '화생'이 아닌 사업포기 '파산' 결정 증가

⇒ 기업대출 연체율 0.52%, 2019년 이후 5년만 최대치 기록

→ 2024년 1분기 기준, 중소기업 부채비율 114.3% 6년만 최고치 기록

52



8.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

고용유지/안정 방안 마련

총고용 유지보장 원칙, 고용안정협약,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 ⇒ 고용위기 시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총고용보장
- ⇒ 고용위기 극복의 경험, 유대감 강화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
- ⇒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 노동시간 단축, 자산매각, 순환휴직, 교육훈련제도 활용 등
- ⇒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고용승계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임금삭감보다 임금반납)
- ⇒ 복수노조 시 연대 필요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전략

- ⇒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활용
- ⇒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활용방안

※ 평소 노조가 경영참가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정보를 입수하고 경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판단하는 등 사전대비가 중요

⇒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응팀' 구성/운영 예정, 실태/현장조사 실시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법제도 개선투쟁

53



금속노련 규약·규정 개정사항

2025년 3월 6일 중앙위원회 보고

54

1. 금속노련 조직혁신T/F(이하 T/F) 구성

- 금속노동자는 친자본 세력과의 투쟁, 산업전환 요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어 기존 관행을 검토하고 실천적인 개혁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기임
- 이에 따라 금속노련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마련하여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조직혁신T/F를 구성·운영함

2. T/F 논의 주제

- 금속노련 규약, 규정, 규칙 제개정 등에 관한 건
- 조직 운영 점검, 조직 활성화 논의 등에 관한 건
- 기타 노련 혁신을 위해 필요한 건 등

55

3. T/F 활동 내용(T/F 활동기간은 24.9부터 25년 정기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일까지)-

- 24년 8월 : T/F 운영 준비
- 24년 9월 11일 : T/F 1차 회의개최
- 24년 10월 14일 : T/F 2차 회의개최
- 24년 11월 5일 : T/F 3차 회의개최
- 24년 12월 3일 : T/F 4차 회의개최
- 25년 2월 5일~6일 : T/F 5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 25년 3월 : 중앙위원회 혁신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25년 4월 : 혁신안 검토 및 확정
- 25년 5월 : 중앙위원회 및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56

1. 규약 개정방향

- 1) 시대에 맞는 내용추가 및 변경
- 2) 현장의 목소리 반영
- 3)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부분은 수정

2. 주요 내용

- 1) 제8조[조직] 금속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금속산업관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한다.

현행	개정(안)
1. 각종 기계류 및 기기류의 공작, 제작, 수리 2.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용 기계기구 제작, 정비 및 수리 3. 전기·전자 산업등과 전선류 제조 및 수리 4. 제련, 제철, 제강, 주조 작업류 5. 조선, 중기의 건조, 의장, 수리 6. 비철금속, 귀금속, 경금속의 제작, 수리 및 부대사업 또는 유사사업 7. 기타	1. 금속 산업 2. 금속 관계 산업 3. 금속일반노동조합 4. 기타 산업 5. ~ 7. (삭제)

57

규약 개정



2. 주요 내용

- 1) 제20조[기관] 금속노련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현 행	개 정(안)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임원·지역본부의장회의 5. 회계감사 위원회 6. 가맹노조 대표자회의	1. 대의원대회 2. 선거인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지역본부의장회의 6. 회계감사 위원회 7. 가맹노조 대표자회의 8. 선거관리위원회 9. 실무집행위원회

58



2. 주요 내용

- 1) 제20조[기관] 금속노련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① 조직혁신 T/F회의에서 2번 선거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침
 - 선거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직접 30,간접 3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대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함.
 - 직접, 간접 30명으로 할 경우 약 3000 여명의 선거인이 구성됨.
 - 지난 3월 6일 197차 중앙위원회에서도 논의됨.
 - 선거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규약 및 규정 제정에 대한 내용은 2026년 3월,4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선거인제도 시행은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으로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 결의 후 시행
 - ② 5호 지역본부의장회의는 임원을 빼고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함.
 - ③ 8호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문화함.
 - ④ 9호 실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서부장으로 구성을 단순화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실무집행위원회 기능은 중앙집행위원회 일부기능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함.

59



2. 주요 내용

1) 제20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현행	개정(안)
제23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① 대의원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1. 조합원수 150명이상 노조는 조합원 15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76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2. 조합원 15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80명당 1명, 단수41명에 대해 추가 1명을 배정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① 대의원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1. 조합원수 300명이상 노조는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151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2. 조합원 30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180명당 1명, 단수91명에 대해 추가 1명을 배정한다.
④ 지역본부는 연맹 파견대의원을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선출, 파견한다. 연맹 파견대의원은 조합원 150명 미만 단위노조에 대의원을 배정하며 1개 노조에 1명을 선출한다. 단, 여성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대의원의 경우에는 1개 노조에서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는 연맹 파견대의원을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선출, 파견한다. 연맹 파견대의원은 조합원 150명 미만 단위노조에 대의원을 배정하며 1개 노조에 1명을 선출한다. 단, 지역본부의 의장은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된 배정인원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여성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대의원의 경우에는 1개노조에서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60

1. 규정 개정방향

- 1) 시대에 맞는 내용추가 및 변경
- 2) 문구수정 및 조정 등
- 3) 산하조직 노동조합 조합 단위노조 가맹노조 등 통일
- 4) 일본식 단어 대체
- 5) 항/호/목 일관성 있게 정리
- 6) 일괄수정: 근로자→노동자/시는→때는
- 7) 본노련,노련 등은 금속노련으로 통일
- 8) 오타수정 등 기타수정

2. 주요 내용

- 1) 처무규정: 제7조 각 부서의 업무 중 교육부, 홍보선전부, 정책기획부, 산업안전부, 여성부, 정치부, 통일사업부에 새로운 업무 추가
- 2) 지역본부운영규정: 제4조 지역본부의 관할 추가
- 3) 업종별 분과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추가
- 4)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관위 구성 변경, 제24조 투개표 부분 전자투표 부분 추가
- 5) 여성할당제규정: 여성할당제 적용은 선출직에만 하는 것으로 중앙집행위원은 삭제

61

2025년 금속노련 교육일정(안)



교육명	일정 (장소)	기간	내 용
권역별교육(경남권)	2025년 1월 24일 (경남지역본부)	1일	노동자와 정치, 산재보상, 회계 실무, 위원장 특강 등
노동문화교육	2025년 3월 5~6일 (홍익대 국제연수원)	1박 2일	노동운동정세, 몸짓배우기, 풍물배우기 등
홍보담당자 교육	2025년 3월 13~14일 (국제청소년센터)	1박 2일	소식지, 성명서, 보도자료 작성 실습, 홍보활동 등
교섭위원교육1	2025년 3월 17~18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1박 2일	노동정세, 임단협지침해설, 단체교섭 전술, 노조활동 등
교섭위원교육2	2025년 3월 24~25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1박 2일	노동정세, 임단협지침해설, 단체교섭 전술, 노조활동 등
선전선동교육	2025년 3월 31~4/1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1박 2일	노동정세, 임단협지침해설, 단체행동 해설, 선전선동 등
노동법률교육	2025년 4월 7~8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1박 2일	노동정세, 임단협지침해설,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여성간부교육	2025년 6월 19~20일(미정)	1박 2일	직장 내 괴롭힘, 선배님 특강 등
노조간부기본교육	2025년 9월(미정)	2박 3일	노동정세, 간부자세, 노동관계법, 금속노련역사 등
신임대표자 및 임원교육	2025년 10월(미정)	2박 3일	노동정세, 노동관계법, 위원장 특강, 단체교섭 전술 등
노동법률교육	2025년 11월(미정)	2박 3일	노동정세, 임금, 노동시간, 쟁의행위,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2025년 12월(미정)	2박 3일	노동정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홍보담당자교육	2025년 12월(미정)	1박 2일	소식지, 성명서, 보도자료 작성 실습, 홍보활동 등

62

1. 2024년 금속노련 조직 현황 (2025년 3월 현재)



구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조직	전체	608	608	625	606	582	537	518
	단조	542	541	559	544	528	486	471
	지부	66	67	66	62	54	51	47
조합원	맹비	117,021	116,096	115,491	116,100	111,174	106,793	101,474
	NPAS	161,980	158,816	160,053	158,443	155,209	141,801	136,401
	노동부	-	-	-	170,059	166,963	144,937	129,260

조직수 NPAS 2025년 03월 기준 / 맹비 6개월 기준(24.09~25.02월) / 고용노동부 2022년 노동조합 현황
금속노련 조합원수 : 17만명 +a

63

2. 2024년 신규조직 현황 (2025년 1월 16일, 13개 조직, 조합원수 1,899명)



지역 본부	조직명	대표자	조합원	설립일	가맹일	업종
경기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이선규	310	23.08.02	24.06.19	승강기 A/S
	쿠리타한수	최기열	189	24.11.22	25.01.03	환경플랜트, 케미칼
인천	에이치알클레우브사무직	한명구	75	24.03.22	24.04.15	자동차 부품
안산 시흥	대원정밀공업	최경선	98	25.01.07	25.01.16	자동차부품
충남 세종	비엠아이	강은석	60	01.07.16	24.06.21	자동차 부품
부산	동국씨엠	성경훈	400	24.02.20	24.02.29	강판
울산 경주	엔비티에스	정종길	201	24.07.01	24.07.04	자동차 밋데리
대구 경북	일텍	안석영	32	24.11.13	24.11.15	자동차부품
포항	동원개발	이재균	33	24.01.03	24.08.12	포스코 환경
	에어릭스	김근모	50	91.01.29	24.11.06	집진기 설치 및 정비
광주 전남	현대EC	임석규	118	24.04.01	24.06.21	철강
	세아M&S	김순수	25	09.10.12	24.12.20	물리브덴
강원	삼표시멘트사무기술직	홍석태	308	14.11.13	24.05.10	시멘트

64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서울	태광산업(지부)	임단협	교섭	진행중
	배터리산업협회연구조합(지부)	교섭	교섭/조정	종료
	위니아덤채사무직	임금체불	집회/법률	진행중
	하이엠솔루텍	임금(조정중 합의), 단협(쟁의중 합의)	자문	종료
	롯데알미늄	임단협	쟁의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경기	볼보트럭코리아	임단협	교섭	종료
	하나로넷	임단협, 도급계약 일부해지	교섭/쟁의	단협중
	삼영전자	임단협, 일방중재폐지, 징계	교섭/쟁의/ 법률	타결 징계대응 진행중

65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경기	발렉스서비스	2024년 임단협/조정, 2025년 임협	교섭/조정	2024년 타결 2025년 임협 진행 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통합	조직화	종료
	한화시스템	임단협/조정	교섭	종료
	대한FA시스템(지부)	임단협/조정	교섭	종료
	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불파	법률	상고중
	삼성전자	임단협	투쟁	종료
	에스와이	교섭/조정	교섭	종료
	코웰패션필코전자사업부	화재로 인한 구조조정, 이전	자문	종료
	쿠리타한수	임단협	교섭	진행중

66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인천	위니아전자	체불	투쟁/법률	진행중
	HL클레무브사무직	(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	법률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안산 시흥	원일사(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제이스코홀딩스(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한샘통합물류(지부)	임단협	교섭/조정	진행중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구조조정	자문	종료
	TRW	구조조정	자문	종료
	신화다이나믹스	2024년 임단협	교섭/투쟁	진행중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대전	로옴코리아정의	복수노조/부당전보/부노	자문	진행중

67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충남세종	캐논코리아	임단협	쟁의	종료
	동해기계항공	교섭/조정	교섭	종료
	코웨이	임단협	교섭	종료
	KBI에이스텍(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KG스틸S&D(지부)	교섭	교섭	종료
	KG스틸협력사(지부)	불파, 도급계약해지	법률/투쟁	진행중
	서진캠협력사아산(지부)	불파	법률	상고중

68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충남세종	SB오토모티브(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TI오토모티브(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린데에이엠티(지부)	임단협	교섭	진행중
	휴스틸노조	임단협	투쟁	종료
	현대ITC노조	임단협	쟁의	진행중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충북	현대모비스	임단협	투쟁	종료
	티와이엠옥천	교섭/(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	법률	종료
	유니투스(지부)	불파/부해부노	법률	진행중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조	임단협	투쟁	종료

69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경남	한국항공우주산업	임단협	교섭/조정	종료
	하이닥코리아	임단협	쟁의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울산경주	고려아연	투기자본(MBK)	투쟁	진행중
	GS에코메탈	임단협	교섭	종료
	조선선재온산	임단협	교섭/투쟁	종료
	NVH코리아사내협력사	임단협/복수노조	교섭/조직화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구미	금속일반 에이스테크지부	불법파견	법률	직고용/종료
	금속일반 올품지부	교섭	교섭	진행중
	SK스페셜티(구,SK머티리얼즈)	매각, 임단협	쟁의	종료예정

70

3. 2024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포항	포스코	임단협	쟁의	종료
	조선선재	임단협, 손배	교섭/투쟁/법률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광주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	부당징계	법률	진행중
	광명산업(지부)	임단협	교섭	종료
지역본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전북	SK넥실리스	구조조정(사망사고), 임단협	협상	종료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	불파/교섭	법률/교섭	직고용/종료
기타	노조명	분쟁내용	지원내용	결과
기타	NVH오버헤드시스템(지부)	임단협	교섭/쟁의/직장폐쇄	종료
	KBS진흥개발(지부)	임단협	교섭/쟁의	진행중

71

5. 2024년 중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			일정	2024년						2025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노동계약 및 노조탄압 대응	윤석열 퇴진운동 및 노동계약 탄압 대응	1차		5/1 완료										
		2차			계획	7/4 완료								
		3차						9/28 완료						
		4차								11/9 완료				
		5차									12/7 완료	범시민대회 (매주 토)		
조직강화 및 지도/지원	노조교육선전물 제작 배포(10차)							12호 13호 제작	14호 제작					
	신규·간부·조합원 표준교육자료 작성									노조법 개정		신규	통상 임금	근기법 예정
	신임대표자·임원 교육									11/21 ~22 완료				
	노동교실(포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역량강화 및 활성화							9/24 송청권 워크숍						
조직확대 및 지도/지원	노조·상급단체 등 필요성 선전물 제작·지원													
연대활동	금속공장 제작배포			Ep20	Ep21 Ep22	Ep23			Ep24			Ep25		
	금속나바시 제작배포			13화	14화 15화	16화 17화								

72

5. 2024년 중요사업 추진현황



조직강화·확대 및 지도 지원

2) 신규간부·조합원 표준교육자료 작성(2023년 사업계획 이월)

□ 사업개요

○ 신규조직, 간부,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

○ 신규: 노동3권, 근기법, 노조법, 큰참법, 단체교섭과정, 상급단체 필요성 등

○ 간부: 간부의 자세, 역할, 노조 운영

○ 조합원: 노동조합·상급단체 필요성, 기초 노동법, 노조운영원리 등

□ 진행 및 진행사업



75

5. 2024년 중요사업 추진현황



조직강화·확대 및 지도 지원

3)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역량강화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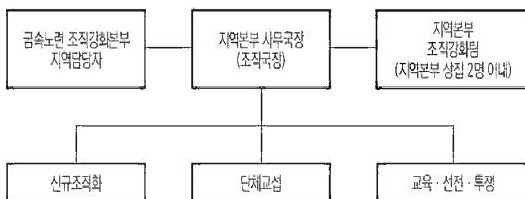
□ 사업개요

○ 2022년 '조직확대와 조직강화의 통일적 실현'을 실현을 위해 설치된 "조직강화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조직강화팀"의 역량 강화, 지역본부의 조직 확대(신규조직, 단체교섭 수입 등), 조직강화(교육, 선전, 투쟁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조직구성

○ 금속노련 -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구성



□ 사업

○ 지역본부 신규조직화 사업, 단체교섭, 교육·선전·투쟁 시, 금속노련 조직강화 본부 지역담당자와 지역본부 사무국장,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그리고 해당 조직이 함께 사업을 논의, 계획, 집행함.

○ 이를 위해 조직강화본부는 조직강화팀은 신규조직 실무, 단체교섭 실무, 교육·선전·투쟁(쟁의행위) 실무 역량강화를 지원함.

○ 조직강화팀 실무역량강화 교육(안)

- 신규조직 실무: 노조설립(가입)

- 노동조합 교육 실무: 노동법(근기법, 노조법), 조직운영, 진장·구제신청서 등 작성법

- 단체교섭·쟁의행위 실무: 단체교섭 요구부터 쟁의행위까지

□ 진행 및 진행사업

○ 삼영전자노조 투쟁지원 사업

- 삼영자본의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금속노련 조직강화팀(금속노련-금속경기본부-삼영전자노조)과 노총 경기본부, 노총 성남지역본부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중심 투쟁

○ 신화다이나믹스노조 투쟁지원 사업(가동예정)

- 신화다이나믹스 사측이 노조 무시 전략에 대응해 금속노련 조직강화팀(금속노련-금속안산 시흥지역본부, 신화다이나믹스노조 + 금속일반노조 + 금속일반노조 안산지역)을 구성해 투쟁 예정(2024년 3월 초 시작)

76



연대 선전활동 등

○ 금속공장

- Ep20(2024. 4. 9) : 단체행동권 확보! 알방중재조항 폐지! 삼성전자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1(2024. 6. 11) : 2024 임투승리! 삼성공장에 깃발을 꽂은 하나로넷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2(2024. 6. 28) : 교섭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티와이엠옥천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3(2024. 7. 26) : 사측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하는세이제강군산지역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4(2024. 10. 10) :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하라! 현장업무수당 인상투쟁! 캐논코리아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5(2025. 1. 2) :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철폐! SK넥살리스협력사지부를 만났습니다!



○ 금속나바시

- 13화(2024. 5. 30) : 단체교섭의 준비(1)
- 14화(2024. 6. 12) : 단체교섭의 준비(2)
- 15화(2024. 6. 24) : 단체교섭 요구(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16화(2024. 7. 10) :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
- 17화(2024. 7. 22) :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
- 18화(2024. 12. 2) : 통상임금 판단 기준 재직자 조건 무효화 되나?
- 19화(2025. 1. 10) :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변경과 임금변동
- 20화(2025. 2. 5)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 21화(2025. 2. 7) :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사건 살펴보기)



77

추가(대표자 상식)



단체교섭 대상

1. 의무적 교섭사항
2. 임의적 교섭사항
3. 교섭 금지 사항

78



노조법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cf.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과의 차이 및 표현의 근거,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조 68107-33)

현행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는 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분류하며,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79



평화교섭을 위한 노사합의서(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렉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발렉스서비스(이하 '회사')는 원만하고 평화롭게 단체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합의한다.

- 아 래 -

1. 단체교섭 기본 절차 및 조항 활동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서 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회사와 노조는 각각 4명~6명 이내에서 단체교섭 위원회를 구성하며, 예비교섭위원 1명을 두어 교섭을 참관하게 하고, 실무 간사 1명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시 및 장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3) 회사와 조합은 원만하고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주 3회(월/수/금 15:00)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필요시 노사합의로 실무교섭을 할 수 있다. 단, 일방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섭개최 2일전까지 통보하고 노사합의로 교섭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4) 회사와 조합은 교섭위원이 변경된 경우, 차기 교섭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행대표위원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통보되되, 단체교섭 및 체결권자(위원장 및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조측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체결 시 까지 근로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유급처리 한다.

- 6) 회사와 조합은 윤번제로 교섭의장과 교섭 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수 차는 회사에서, 파수 차는 조합에서 행한다.

- 7) 회사와 조합은 매 교섭시마다 중등으로 회의록 2부를 작성하고, 교섭위원 등의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조합원이 교섭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8)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교섭 준비, 단체교섭 전후 회의 및 평가 등을 위한 노조사무실을 조합에 우호로 대여하고 조합이 편리하도록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품, 집기, 전화, 컴퓨터, 전산 장비와 시설 등을 제공한다.

- 9) 회사는 노조법 제24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2013.31호에 근거하여 조합이 지명한 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지위와 최대 상한시간을 보장하고, 정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 10) 회사는 임금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에 결의하여 공제 의뢰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당해 임금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단, 등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하고 조합은 신규공제 대상자 명단을 임금지급일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한다.

80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노동조건 선결 요구사항

11) 회사는 조합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매 1년마다 1만원 을 추가로 지급한다.

연수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금액	30,000원	50,000원	70,000원	90,000원	110,000원	130,000원

12) 회사는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이 휴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 대체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200%를 대체근로(휴일/연장근로) 수 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체근로자가 없을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조합 원에게 1일당 8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13) 회사는 조합원에게 만 65세가 종료되는 해의 말일까지 근로를 보장한다(정 년). 다만 정년 이후 촉탁 근로를 체결한 경우 임금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노 사합의로 정한다. 다만,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촉탁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14)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년중 5일의 Refresh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3. 기타

15) 노조는 본 합의 후 7일 이내에 단체협약(안)을 제출하고, 노사는 단체협약 (안)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